#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99 발의연월일: 2022. 4. 5.

발 의 자:김형동·김학용·김태호

김용판 · 김승수 · 이종성

이주환 · 임이자 · 권명호

주호영 · 조명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선거사무원 및활동보조원이 장시간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및 제135조제2항 신설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증감할 수 있다.
- 1.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 2.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변경 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 중 "第3項의"를 "제4항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 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 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 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 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 한다.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를 증감할 수 있다.
- 1.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 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 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 시하는 전국소비자물<u>가변동</u> 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 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 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제한액산 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

#### ③ (생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신 설>

-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류와 금액은 中央選舉管理委員 會가 정한다.
- ③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다 정한다.

- 2.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 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 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시간 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근 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 른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 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 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報償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5. ~ 7. (생략)

② ~ ⑧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u> 4항
<u>의</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